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 경유 남북한 방문 출입 정보의 관계 행정기관간 공유 〉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4)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건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내용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생략) <u><신설></u>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및 제13조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1)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 1)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 시 방문기간을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국민, 외국법인 취업자가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위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문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은 자는 제27조2)에

-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이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외 국민이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의2³⁾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북한 방문승인 신청절차 〉



자료: 대북지원정보시스템

□ 현행법 제11조⁴⁾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⁵⁾에 따라 출입 심사를 받으려

2)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4)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①신원의 확인, ②휴대품 등의 검사, ③검역, ④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등의 심사가 이루어짐.

□ 개정안은 이 법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및 제13조6)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⁷⁾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문 승인 신청 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6조제2항⁸⁾에 따라 필요 시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통일부는 북한 방문 승인 관련 신원 확인을 위해 방북 신청인 명단을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으며, 물품 반출·반입 승인 정보도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출입하는 경우 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면,

개정안과 같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 이외에 외국을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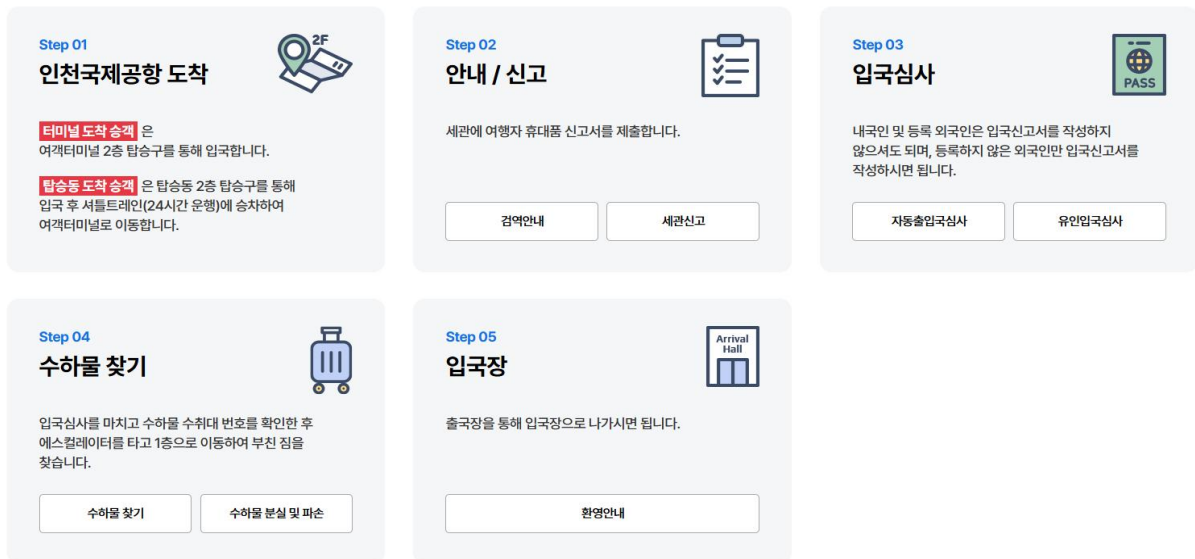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6조(관계기관 정보 제공)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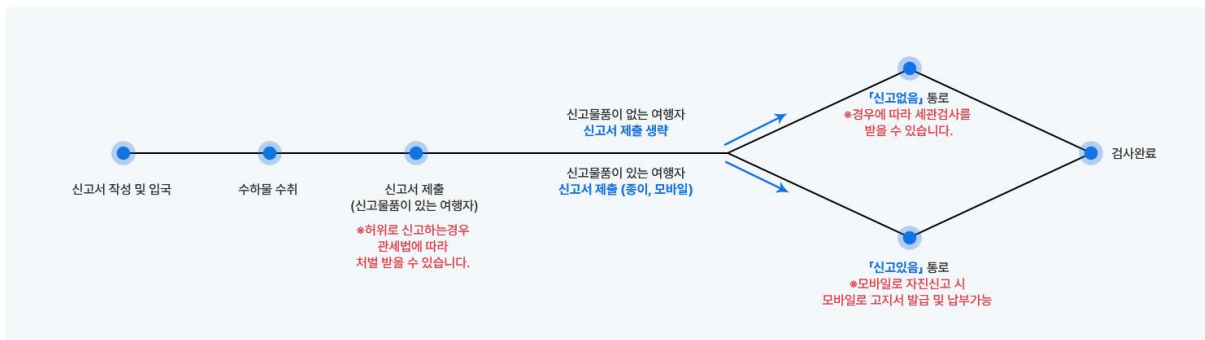
거처 남북한을 출입한 경우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확대하거나, 세관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미승인 물품을 반출·반입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통상적인 출입국심사가 아닌 강화된 출입국심사를 거치도록 법률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입국절차 및 세관검사 절차 >



세관검사 절차



자료: 인천국제공항 입국안내

□ 통일부는 관계부처 간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통일부는 북한방문 승인 관련 신원 확인 등을 위해 방북 신청인 명단을 법무부에 공유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관련 승인 정보 등을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으나, 출입심사 시 검역 등의 경우에도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질병관리청은 이 법 시행령 제22조 출입심사 업무에 ‘검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법 제23조(검역 등) 검역조사 대상에 남북한 직접 왕래자 뿐만 아니라 외국을 거치는 경우(중점검역관리 지역 체류, 경유 등)도 검역이 필요하므로,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67
